

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4. 11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지가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지가공시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, 토지·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법 제명을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함에 따라,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평가사항 등을 동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이 되도록 명칭의 변경과 주택가격공시 처리절차 등을 신설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“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로 변경
- 나. 기존 「토지평가위원회」 명칭을 「부동산평가위원회」로 명칭 변경(안 제1조)
- 다. 위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가공시 심의 외에 개별주택가격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·신설함(안 제2조 각호 개정 및 신설)
- 라. 위원회의 위원해촉 조항이 없어 “위원의 해촉”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 신설)
- 마. 지가공시와 주택가격공시 조사담당 주관부서가 다르므로 업무별 주관부서에서 운영토록 간사, 서기 지명 규정 개정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동법 시행령 제51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지적과-1208(2005.3.4)호에 의거 세무과 협의
- 라. 입법예고기간 : 2005. 3. 11 ~ 3. 31 ▷ 의견제출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”를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시행령 제51조”로 하고, 동조중 “토지평가위원회”를 “부동산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여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
3.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위원 :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평가대상 업무별로 각각 1인을 두되 지가공시는 지적과 소속 공무원으로, 주택가격공시는 세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
- ②간사는 지가공시 또는 주택가격공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,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 간사가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,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,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 운영조례</p>	<p>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· 운영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시 행령 제14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 는 사하구 <u>토지평가위원회</u>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</u>」 제20조 및 시 행령 <u>제51조</u>----- -----<u>부동산평가위원회</u>----- -----</p>
<p>제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<u>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·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심의사항) ----- -----</p> <p>1. <u>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·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의 내용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위촉위원 :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</u></p> <p>②~⑤ (생략).</p>	<p>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위촉위원 :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</u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중 간사가 지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의2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<u>위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</u> 2. <u>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</u> 3. <u>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 4. <u>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,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</u> <p>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<u>평가대상 업무별로 각각 1인을 두되 자가 공시는 지적과 소속 공무원으로, 주택 가격공시는 세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간사는 <u>자가공시 또는 주택가격공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,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 간사가 정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